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14호 2014. 3.10.(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87

뒷면에 계속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0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3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4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6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8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71호 등록 공인 공고 ----- 99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77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00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를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 목의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를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송 등”을 “소송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예산



편성전”을 “예산의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을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으로,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를 따르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로,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을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시설보수는 구”를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4조 내지 제36조”를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구시설등”을 “영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생산량중”을 “생산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으로 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begin{array}{l}
 \text{(토지) 대부분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text{(건물) 대부분을 받은 해당 총의 총 공용면적}
 \end{array}
 \times
 \frac{\text{(토지·건물) 대부분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 \text{(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총의 총 면적}}$$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을 “대부료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을 “대부료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을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 중 “보관함으로써”를 “보관하여”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4퍼센트”를 “2퍼센트”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매각대금의 감면)”을“(조성원가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단지내의”를 “단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 재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제3절(제40조)을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사등”을 “청사 등”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 중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관리비(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비(1급 내지 2급”을 “운영비(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내지 2급”을 “경비(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기요금(1급 내지 2급”을 “전기요금(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화요금(1급 내지 2급”을 “전화요금(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요금(1급 내지 2급”을 “수도요금(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공동관리비(1급·2급”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1”을 “제50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7조 중 “정하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 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2. 급식의 지원방법 및 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3. 급식단체(업체) 선정 및 취소
4. 전자카드 위탁업체의 선정 및 평가 후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아동급식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2.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 교사, 교육청의 급식업무 담당
4.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음식업협회, 급식업체(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담당국장 및 아동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동 주민센터 지정위원) ① 아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아동위원,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등 주민센터 지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은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아동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동 지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이내”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송비용지급 기준(별표)”을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 기준(별표)”으로 한다.



별표의 “고문변호사수당”란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공포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 구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 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를 “제1항에 따른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그” 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로, 같은 항 제5호 중 “협력사업 추진능력” 을 “협력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할 수 있다” 를 “평가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구성등” 을 “구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로, “과반수이상으로” 를 “과반수로 ” 로, “위촉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인정한 때” 를 “인정한 경우”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으로, “4월전까지 시보·구 공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를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보·구 공보” 를 “구보”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중도해지등” 을 “중도해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서구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를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구성등” 을 “구성 등” 으로,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를” 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등” 을 “수당 등” 으로 하고,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 를 “위원에게” 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9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5 (9) (6) (7) (3)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8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구와 협력사업	5 5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
 - 가.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의 하한을 배점한도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점)**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43조 제8항” 을 “제43조 제8항 및 제43조의3” 으로 하고,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을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으로 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을 “각 호의”로, “9명”을 “11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2명”을 “3명”으로, 같은 조 제5호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을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상자 선정)①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2



차 투표를 실시 하되, 상위 고득표자가 2명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거 2명의 후보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2조제1항의 사회봉사분야는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과반수 득표 미달 수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2명, 2명인 경우에는 4명의 다득표자를 선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항의 하단규정을 적용하여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중 “제9조(시상)” 을 “제10조(시상)” 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부상)” 을 “제11조(부상)” 으로 한다.

제14조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를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을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이 이를”을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가 이를”을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재산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계할”을 “인계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리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등기등록 기타”를 “등기등록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구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 기타”를 “도면,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6항에 따른”으로,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 기타”를 “도면,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관하고자 할”을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재산대장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 중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2 전단 중 “발송하는”을 “발송할”로 한다.

제34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 및 제13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며, 제27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별지 제1호 서식]

은 닻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5.30)

공유재산관리대장 (9-1)

CODE NO :

(토 지)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작성 자	부속 서류	구	확 인	색 인
		중분류				분	등기부등본	
		소분류				분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분	지적도등본	

지 적	취득시 :	㎡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재 :	㎡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							수익상황	관리취득상황		관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상 대 방	변 동 사 항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2)

CODE NO :

(건 물)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작성 자	부속 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면적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재 : m ²				년도	내용	금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수	단면적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3)

CODE NO :

(공 작 물)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및 주 재 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확 인	
		중분류			구		분	색 인	
		소분류			등 기		부 등 본		
		세분류			배 치		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4)

CODE NO :

(임 목 족)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구 분	확 인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주				
식재 상 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연일일		연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5)

CODE NO :

(선 박)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확 인 비 고		
		중분류			등	기	부	등		본	
		소분류			배	치	도	평		면	도
		세분류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향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향	m	최대탑승인원
		등 록 연 월 일	m	착 연 월 일
		등록번호		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		제 조 자
		신체자료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부 속 서 류				
채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공유재산관리대장(9-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명 칭 :

재산 관리 관 종 목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취 득	연 혁			
등록 번호										
증 감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이 동										
상 황										
자 산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재 평 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내 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 록	대조	비 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9-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이 상 황	감 동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 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 목 및 종 목	용 도	구 조	전기		증		감		증 감 사 유	등기	
				시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구 분	일 자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관리자 직

년 월 일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가	평가액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재지		시군		동읍면		거리		번지		
차수물건	토지	지목	m ²	건물	종목			부속물	명칭	수량
		지적			구조					
			적		전체	m ²				
							차수			
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금지급			적요	
		금액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불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 유상 [] 무상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_____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_____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_____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따르면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자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천원)

(단위 : m²,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천원)

(단위 : m²,

일련번 호	재 산 표 시			추정가 액	취득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수량						
1건	처분 취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양여대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 간	대부및사 용 허가용도	요율	추정대부 (사용)료	대부및 (사용허 가)방법	비고
	종 별	소재지	지목 · 구조	수 량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무상대부(사용허 가) 근 거	비고
	종 별	소재지	지목· 구조	수량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할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어구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일체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 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인천광역시구청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http://www.seo.incheon.kr>)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일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 나. 제 공과금의 지변

제5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교환대상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18호 서식]

행정 재산 용도 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 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 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재지		시		구		동		읍		면		가(로)		리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	명칭		타	구조		부속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용도			형식									
		전체			면적			수량									
		대부사용			전체 m ²			대부·사용 m ²									
적요																	
허가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 년월일		기간			대부 대사료 금액	대부·사용료징수		사용자							
								금액	징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월	일											



[별지 제21호 서식]

토석 가격 평가 조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²)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m ² 당 단가 (B)	금액 (A×B)	
								OO단체	OO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 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치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② 여건	인구수	직원수	수용기관		
	명	(정규)명			
③ 대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 위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 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 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 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 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 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3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지	구 조	조 층
	건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3호의2(1)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m ²)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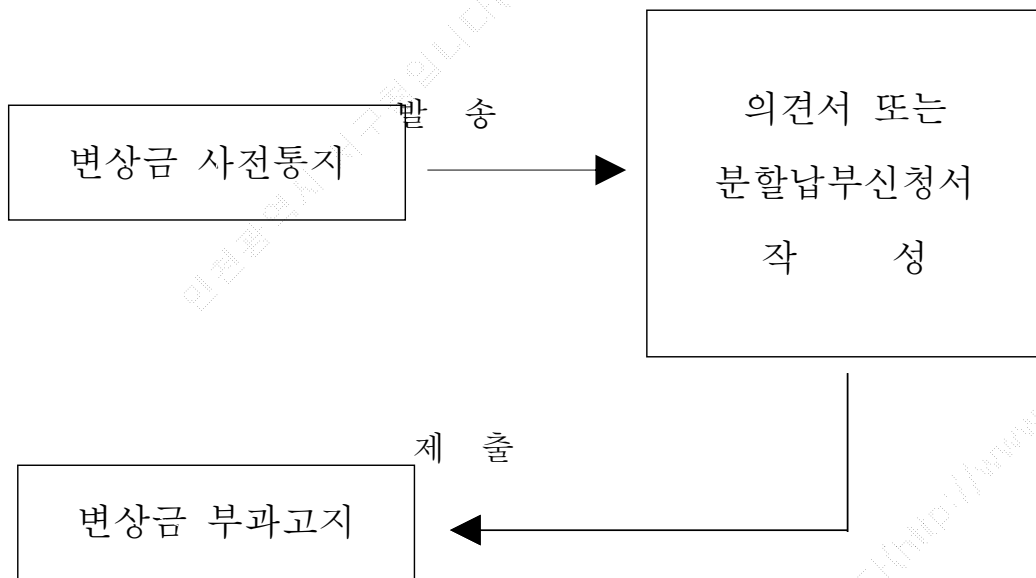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
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23호의2(2)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 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
함.

20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직 성명
-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범무담당”을 “범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범무담당”을 각각 “범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 4 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5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승소한”을 “승소하였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9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5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2-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연희동 799-9	청라라임로 65	2011.02.14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에메랄드존 지역의 yellow-green 색상에서 착안	
2	인천 서구 심곡동 293-8	심곡로100번길 17-5	2009.08.28	심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939-21	청중로 133	2010.11.05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로 청라중앙로를 줄인 말	
4	인천 서구 검암동 668-1	도요지로236번길 9-1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733-11	경서로56번길 3-5	2009.08.28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가정동 280-2	승학로 29	2009.08.28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7	인천 서구 석남동 223-449	건지로109번길 44	2009.08.28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경서동 736-12, 736-13, 736-15, 736-16	경서로56번길 7-2	2009.08.28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가정동 497-4, 497-5	원창로229번길 28-1	2009.08.28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당하동 1082-2	청마로19번길 20	2008.11.2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6-3블럭	마중로 25	2012.10.19	마중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39-3블럭	검단로 122	2008.11.21	현 금곡동 쇫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	
13	인천 서구 왕길동 672-10	완정로165번길 31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41-3블럭	검단천로356번길 30	2012.10.19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약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22블럭 4로트	검단로744번2길 18	2008.11.2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23블럭 6-3로트	검단로744번2길 4-7	2008.11.2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21블럭 1로트	검단로744번2길 11	2008.11.2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 서구 오류동 834	검단로 226	2008.11.21	현 금곡동 쇫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	
19	인천 서구 오류동 434-60	원당대로246번길 22	2008.11.2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 서구 마전동 1025-7	완정로45번길 40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 서구 당하동 93-3	고산후로78번안길 24	2008.11.21	고산후로78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2-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2	인천 서구 당하동 749-20	드림로 483-3	2009.07.12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23	인천 서구 원당동 466	원당대로 997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지명에서 유래	
24	인천 서구 대곡동 596-1	가현산로46번길 61-2	2013.07.30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14블럭 9로트	검단로755번길 2	2008.11.2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 서구 마전동 515-26	원당대로 763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지명에서 유래	
27	인천 서구 원당동 222-9	원당대로 1043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지명에서 유래	
28	인천 서구 원당동 493-5	원당대로 997-1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 서구 가정동 510-4	원창로239번길 10	2014.02.0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3.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푸른로16번길 3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3-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대곡동 438-9	설원로 134	설원로 130	건물군 분리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2	대곡동 438-4	설원로 134	설원로138번길 10	건물군 분리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대곡동 411	설원로 124	설원로 126	건물군 분리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3.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간촌로39번길 4외 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3-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연희동 699-8	간촌로39번길 4	2014.02.26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금곡동 519-1	봉수대로 1668	2014.02.25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가정동 36-3, 36-5, 36-8, 36-10	염곡로 596	2014.03.03	건축물 멸실	
4	인천 서구 가정동 37-7, 37-10	염곡로 602	2014.03.03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로1류27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3.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가정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중1-27호선)】

1. 변경사유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9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27호선)
 - 【명칭】 인천가정지구 주변도로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1,893m, B = 2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 2011. 04. 25 ~ 2014. 03. 31(기정)
 - 2011. 04. 25 ~ 2014. 10. 31(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271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등록 사유
- 선거 사무용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4년 4월 1일
3. 등록공인 인영

등록 공인명	규 격(㎠)	등록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선거전용 20	2.4×2.4		선거 사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277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4년 3월 6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암경서동통합민원전용1 (종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암경서동통합민원전용1 (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암경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종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암경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1(종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2(종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청라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1동장인/ 통합민원전용2(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1동장인/ 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2(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청라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2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2동장인/ 통합민원전용2(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청라2동장인/ 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1동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1동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2(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4동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1(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2(중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검단4동장인/ 통합민원전용2(횡형)	통합증명발급기설치	2014년 3월 6일	